

미래를 여는
협력교육

서울자랑 많음!
서울교육 바람!

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자원 사업 계획



2026. 2.

서울특별시교육청

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

[학생맞춤지원담당관]



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계획

학생맞춤지원담당관 교육복지팀

I 사업 개요

□ 추진 목적

-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
- 학생·학부모 수요를 반영 및 수강료를 직접 지원하여 방과후학교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교육비 부담 경감

□ 관련 근거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1, 제62조, 제67조
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7, 제106조의2
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 제90조부터 제92조
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6조, 동법 시행령 제4조, 동법 시행규칙 제7조
- 「난민법」 제33조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13조
- 2026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요령 및 점검 계획 안내(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-316, 2026. 2. 6.)
- 2026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운영방안 안내(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-1207, 2026. 2. 25.)
-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(안)(학생맞춤지원담당관-3001, 2026. 2. 26.)

II 세부 추진 계획

전년 대비 변동

2025학년도			2026학년도	
지원 대상	◦ 학교장 추천 비율 15% 범위 내 ◦ 전 학년도 지원 대상자(학교장 추천 제외) 1기 방과후 최대 15만원 지원 가능	➔	지원 대상	◦ 학교장 추천 비율 20% 범위 내 ◦ 전 학년도 지원 대상자(학교장 추천 제외) 1기 방과후 최대 15만원 지원 가능 (단, 초3 제외)

1 지원 개요

○ 지원 기간: 2026. 3월 ~ 2027. 2월

-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

* 해당 연도 소득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지원 자격 해지지는 당해 학년도 말까지 계속 지원 하되, 학교장 추천 대상이 전출 간 경우 전입교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님. 또한, 학교장 추천 대상인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의 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학년도 범위에서 지원 기간 결정

○ 지원 대상: 초·중·고등학교¹⁾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

구분	지원 자격([붙임1] 참조)		대상 확인
1		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	NEIS > 교육복지 > 심사관리 > '교육복지 심사보장결정관리'
2	법정 저소득 자격	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
3		법정차상위대상자	
4	소득인정액 기준	중위소득 80% 이하	
5	학교장 추천	추천 비율* 20% 범위 내 *비율(%)=(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지원 학생 수 / 자유수강권 지원 선정 학생 수)×100 단, 지원 선정 학생 수(당해 연도 5. 31.자 기준)가 20명 미만인 경우, 추천 지원 학생수는 3명으로 함	
기타	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([붙임기 참조])		

- 중복지원 제외 대상: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과에서 별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미지원

※ 단, 초·중·고등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원 대상(소득 기준 충족 전제임)

- 2025학년도 지원 대상자였으나, 2026학년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2026학년도 1기 자유수강권 지원 가능(학교장 추천 대상자는 제외)

※ 교육비지원 대상자가 5월에 선정되므로, 1기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

→ 2026학년도 초3 방과후교육비 지원에 따라 **초3은 1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지원 제외**

· 대상자 확인: NEIS > 교육복지 > 심사관리 > 교육복지 심사보장결정관리 > 2025학년도 선택 > 조회 > “방과후: 완료[O] 또는 통보[O]”

· 1기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 시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 가능

※ 단, 2026학년도 1분기(3월~5월)에 시작된 1기 방과후학교인 경우에 한함

○ 지원 내용

- 지원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²⁾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

1) 각종학교(고등과정 포함) (단, 국립학교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)

2) 방과후학교: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활동으로,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

※ 「2026 초등돌봄교실 운영 가이드라인(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)」, 「2026 중등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(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양육혁신교육과)」에 의거하여 운영

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* 지원(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)

※ 수강료 = 강사료 + 도서구입비 + 재료구입비(간식비 포함) + 수용비(시설 및 설비 유지비 등)

- 학교회계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, 보호자나 강사에게 직접 교재비나 재료비 등 현금 지원은 불가
- 1인당 60만원을 소진하고, 추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지원 대상 학생에게 연간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(1인당 연간 최대 80만원)

○ 지원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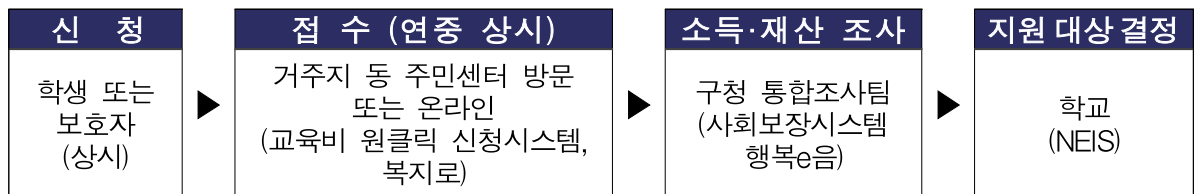
(방과후학교 프로그램)

- 본교, 타교 간 연계·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, 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강좌 등 방과후학교 모든 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 및 토요일·방학중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
-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(자문)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(입장료, 대여료, 교통비)

※ 단, 일회성 프로그램에 자유수강권 지원은 불가하며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거치지 않고 수시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은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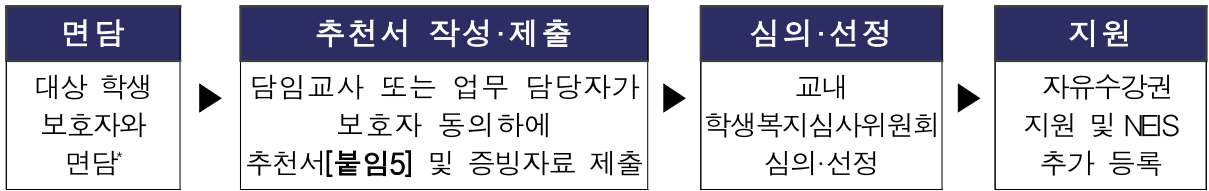
○ 선정 절차

(법정 저소득 자격 및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) (1~4순위) [붙임2,3] 참조



- ▶ (소득·재산 조사) 구 통합조사팀이 행복e음에 등록된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과 가구원의 각종 공적자료 조사
- ▶ (대상자 선정) 구청(행복e음)에서 학교(나이스)로 소득·재산 조사 결과 송부
- ▶ (심사결정) 나이스로 심사 작업 진행 후, 학교장 결재를 받아 심사 결과 확정
- ▶ (나이스 결과통지) 신청인 휴대전화(문자메시지) 또는 국민비서로 심사결과 통보 및 탈락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 상세 안내
- ▶ 신규 신청자와 신청 간주자(확인조사 대상자)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취소(철회) 요청 하고, 지원 증지는 학교에 직접 요청 → 학교(나이스)에서 증지 처리
※ 향후 교육비 지원 재희망 시, 다시 신청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

(학교장 추천에 따른 지원) (5순위) [붙임4] 참조



▶ 보호자 면담시에 교육비 지원 탈락 또는 신청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 등을 확인하고,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의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

-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, 소득·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

※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(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,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 행정적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), 소득·재산이 없는 혈족을 부양하는 경우 등 학교장 추천 가능

- 학교장 추천 비율*: 자유수강권 지원 선정 학생 수 20% 이내로 산정

* 비율(%) = (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지원 학생 수 / 자유수강권 지원 선정 학생 수**) × 100
 ** 선정 학생 수 :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전체 학생(당해연도 5. 31.기준)
 예) 김○○학생이 1, 2순위로 선정되었지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선정 학생 수에 포함
 ※ 지원 선정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학교장 추천 지원 학생 수는 3명으로 산정

- 추천서 및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의무 제출

(기타 지원) (난민 인정자, 특별기여자 등) [붙임7] 참조



※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 인정자 지위의 계속 여부 확인 가능 → 매 학년도 초 학교에서 민원인에게 난민 인정자, 특별기여자 자격 유지 여부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 후 지원

○ 지원 절차

예산 신청	학교 ⇨ 교육지원청 ⇨ 본청
	① 지원 대상 학생의 지원 자격 및 사용 금액 확인 ② 분기별 예산 신청 및 지원 실적 관리
예산 교부	본청 ⇨ 교육지원청 ⇨ 학교
	① 예산 신청 내역 확인 후 예산 재배정 및 교부 ② 예산 적정 집행 관리 및 점검

2 변동 유형별 처리 방법

○ 자격 변동에 따른 지원

당해 학년도 교육비 지원 자격 신규 취득	교육비 지원 심사완료 전 자격 취득	교육비 지원 심사완료 전 지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, 교육비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(月)부터 지원
	교육비 지원 "미선정"으로 심사 완료 후 자격 재취득	교육비 지원 '미선정'으로 심사완료 후 신규로 법정 저소득층 자격을 취득했다라도,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비 지원을 재신청해야 함 ※ 단, 교육비 지원 재신청한 달(月)부터 지원됨
당해 학년도 교육비 지원 자격 해지		당해 학년도에 교육비 지원 선정 후 지원 자격에서 탈락하였다라도 해당 학년도 말까지 계속 지원 ※ 단, 학교장 추천 대상자는 전출 시 지원 대상 아님

○ 학적 변동에 따른 지원

전·출입	전출교	지원 대상학생의 교육비 지원 내역(지원 자격, 사용액 등)을 반드시 입력하여 전출처리 ◦ 경로: NEIS > 교육복지 > 수급자관리 > 전출입관리
	전입교	전입생이 전출교에서 사용한 교육비 지원 내역을 확인하여 1인당 연간 지원금액 중 사용 잔액만큼 지원 ※ 타 시도로 전출 시, 해당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기준에 따름 ※※ 단, 학교장 추천 대상자는 전출 시 지원 대상 아님
유예·휴학		지원 대상자 자격 유지(교육비 지급만 중단)
자퇴·퇴학		학생이 자퇴·퇴학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, 해당 학생이 재입학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

○ 지원 중지 요청에 따른 처리

교육비 지원 중지	학교로 중지요청	교육비 지원 중지 요청서 【붙임9】 을 징구하여 내부결재 후 NEIS에서 보장 중지 처리
	주민센터로 중지요청	(구청) 지원 중시 신청 관련 공문 학교로 시행 → (학교) 내부결재 후 NEIS에서 보장 중지 처리
교육비 신청 취소(철회)		신청자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취소(철회) 요청

○ 위탁교육에 따른 지원(고등학교)

소속교(원적교)	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위탁교육생 명단을 위탁교육 기관에 송부 ※ 위탁교육생 제외하고 예산 신청
위탁교육기관 ³⁾	소속교로부터 통보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자유수강권 지원 소요 예산을 관내 교육지원청에 신청하여 지원·관리

3) 위탁교육기관(7교): 서울산업정보학교,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, 아현산업정보학교,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, 종로산업정보학교,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, 오디세이학교

Ⅲ 행정 사항

□ 개인정보 보호 철저

-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직원 연수 강화 및 학교별 자체 점검
- 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단순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해당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

< 학생 개인정보 관리 부적정 사례 >

- ▶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개인 상담 내용이 외부학생에게 노출
- ▶ 교육비 납입 고지서 및 납입 영수증으로 인한 정보 노출
- ▶ 교육비 지원 학생만 대상으로 학교장 훈화로 주위학생들에게 노출
- ▶ 수강신청 접수시 일반학생에게만 수강신청서를 받고, 자유수강권 대상자에게는 받지 않아 정보 노출
- ▶ 학교 내 각종 회의(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)에 다른 학부모가 참여하여 교육비 지원 내역 등 지원 대상 학생의 정보 노출
- ▶ 운영계획에 자유수강권 대상자 명단을 기재하여 정보 노출
- ▶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결재 공문 기안 시 열람 제한 미처리

□ 법정 저소득층 교육비 납부 유예

- 법정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의 경우 교육비 납부 유예 신청 가능하며, 대상자에게 납부 독촉 금지 및 CMS 계좌 인출 유예
 - (기존 수급자)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명단 확인 가능
 - ※ NEIS > 교육복지 > 심사관리 > 교육복지 심사보장결정관리 > 학년도 선택 > 조회 > “법정저소득 자격(기초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) OR 중위소득 80% 확인
 - (신입생) 법정 저소득 자격 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납부 유예 처리
- 납부 유예 대상자에게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시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함을 별도 고지
- 수익자부담경비(학부모 납부 금액)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나 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즉시 환불
 - 교육비 지원 대상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환불

□ 지원금 집행 및 관리

-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신청주의이므로, 지원 자격이 있더라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
- 초등학교 저학년, 상급학교 진학 등 학령기 전환 학생이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
- 일반 학생과 구분하여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설·운영 금지
- 월별 또는 분기별 사용 한도 및 수강 강좌 수 제한 금지
 - 과목별·분기별 사용금액 및 자유수강권으로 수강 가능한 프로그램 수를 제한하여 지원하거나 재료를 학생에게 별도로 징수하지 않도록 유의
 -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을 조기 소진할 수 있다는 사유 등으로 연간 지원 한도 금액보다 적게 지원하면서 수강료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지도·감독
 - ※ (감사원)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점검 결과('14.9.), 자유수강권 지원 부적정 사례
- 동일한 수업에 대해 별도의 수강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
- 지원 대상 학생의 실제 수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금 예산 집행
 - 지원금 예산 집행 시 방과후학교 출석부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
 -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대장 및 근거 서류 정리·보관
 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별 사용금액 누계 작성·관리
 - 분기별 실제 소요예산 및 불용 예상 금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 노력
- 방과후학교 출석률이 저조한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 이용 관리 주의사항⁴⁾
 - 지원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한 강좌에 대해 한 분기 동안 출석률 50% 미만일 경우: 반드시 학생 상담 등을 통해 미출석 사유 확인 및 수강 적극 독려하고, 다음 분기에도 동일 강좌에 대하여 출석률 50% 미만일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중지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
 - 위 절차 이후에도 차분기 출석률이 50% 미만일 경우 **동일 강좌에 대하여 다음 분기 지원 중단**

4) 감사원 교육감사단 제1과-1640, '13.6.에 따라 참여 불성실한 학생의 제재 기준 마련

※ (예시) 1분기 한 강좌에 대해 출석률 50% 미만인 경우 → 2분기 시작 전 학생 상담을 통해 미출석 사유 확인 및 수강 독려, 2분기에도 동일 강좌에 대해 출석률 50% 미만인 경우 3분기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 → 2분기에도 동일 강좌에 대해 출석률 50% 미만일 경우 3분기 **동일 강좌** 지원 중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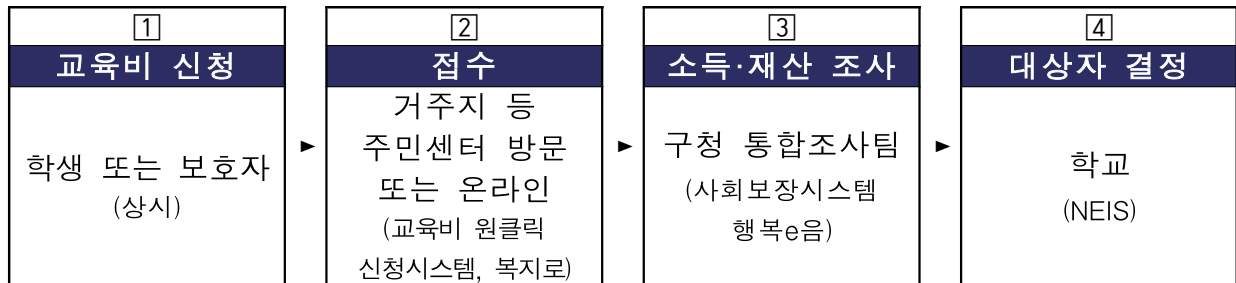
- 거부감 또는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·학부모 상담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
-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 조치*
 - ※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(비용의 징수), 제67조 제4항(벌칙)
 -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이 지원 받게 한 경우 비용 징수 및 고발 조치([붙임8] 참조)
- 지원금 예산 집행 및 관리 기준
 - 공립학교: 「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에 따름
 - 사립학교: 「사립학교 교비회계 2026학년도 예산 및 2025학년도 결산지침」에 따름
- 사업 종료 후 지원금 집행 잔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반납

붙임 1 교육비 지원 관련 주요 용어 설명

용 어 명	근거법령(주체)	설 명	
중위소득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호 (보건복지부)	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,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	
교육급여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3항 (보건복지부)	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하인 자 ※ NEIS > 교육복지 수혜수급자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	
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(여성가족부)	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(취학 시 만22세 미만)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이하인 자 ※ 일반 모·부자 가정과는 다르며, 신청에 의하여 소득·재산 조사 후 자격이 주어짐 ※ 동주민센터에서 급여대상자로 통보 ※ NEIS > 교육복지 수혜수급자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. 주민센터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	
법정차상위 대상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(보건복지부)	차상위자활급여 대상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
		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	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3호 리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
		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	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거나,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
		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	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
		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	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로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경우로,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재(구) 우선돌봄 차상위대상
소득인정액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9호 (보건복지부)	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 * 소득평가액=실제소득 * 재산의 소득환산액=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×월소득환산율	

붙임 2 2026학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

□ 신청 처리 흐름도



□ 2026년 신청 및 심사 일정

- (홍보) 법정자격대상자의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및 교육비 신청 홍보 실시(가정통신문 발송, 리플릿, 현수막 설치 등)
- (신청) 집중 신청기간 2026. 3. 3.(화) ~ 3. 20.(금)
 - 방문 신청: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
 - 인터넷 신청: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
 - ※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교육비 지원 상시 신청 가능
 - ※ **확인조사대상자(교육비를 신청하여 '25학년도에 지원받은 학생)**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2025년 교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. 단,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간주 대상 여부를 조회하여 확인
- (조사)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행복e음을 통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“소득인정액” 산출하여 NEIS로 통보
- (심사) 5월 초 이후 학교 심사 가능
 - NEIS로 통보된 신청 학생의 “자격” 및 “소득인정액” 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비별 기준에 맞게 대상자 선정
 - 학교장 결재를 받아 심사 결과 확정 후, 문자메시지(SMS) 통보
- (중지) 교육비 신청을 취소(철회)하거나, 지원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
 - 신청 취소(철회): 주민센터로 취소 요청이 가능함을 안내
 - 중지: **【붙임9】** 중지 요청서 접수하고 내부결재 후 보장 중지 처리
- (이의신청) 소득·재산 조사 관련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안내. 재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

붙임 3

NEIS 상 교육비 지원 자격 확인 방법

심사보장결정관리

교육복지 > 교육복지 > 심사관리 > 교육복지 심사보장결정관리

학생자격														가구자격	중위소득(%)							
생계	의료	주거	교육	한부모	자활	본인경감	장애수당	장애연금	확인발급	기타	학급	다자녀	다문화	다문화	조손가정	소년소녀	보통학교대상	특수학교대상	민간	기타대상자		

① 학생자격

- 생계 : 생계급여수급자
- 의료 : 의료급여수급자
- 주거 : 주거급여수급자
- 교육 : 교육급여수급자
- 한부모 :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자활 :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
- 본인경감 :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장애수당 :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
- 장애연금 :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
- 확인발급 :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
- 기타 : 법정자격 없는 경우 → ③ 중위소득 확인
- 학교장 : 학교장추천

② 가구자격

- 학생의 가구구성원 중 법정 저소득 자격이 있는 경우 표시됨

③ 중위소득

- 법정자격 없는 자(기타)에 해당되는 교육비 지원 신청자의 중위소득 확인 가능

심사신청사항(법정상항(법제[이신청/[-]미신청))							결과(요청,취소,승인, 반려)				신청서 도착횟수	신청일자	교육급여 지원	
입학금	수업료	학교운영비	급식	발과후	PC	인터넷	상태	일자	승인자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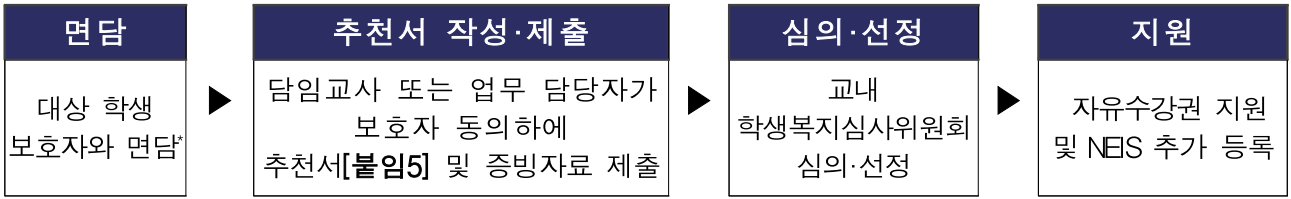
④ 신청서 도착횟수 및 신청일자

- 교육비지원신청서 도착횟수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일자 확인 가능

⑤ 교육급여 지원

- NEIS 상 교육급여 자격의 보유여부 및 교육급여 자격 신청(중지)일자 확인 가능

붙임 4 학교장 추천 지원 절차 상세 안내



□ 보호자와 면담

- 교육비 지원 신청 후 NEIS 심사 결과 탈락한 학생 혹은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와 상담

- 보호자의 동의 확인
-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는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있으며,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 제출 시 추천이 불가함을 안내
-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의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

□ 학교장 추천서 작성 및 증빙 서류 구비

- 보호자의 동의하에 담임교사 또는 업무 담당자가 학교장 추천서 [붙임5] 작성
- 대상자별 필수 구비 서류 목록

※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(감사원 지적 사항)

구비 서류	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한 학생	교육비 지원을 신청 할 수 없는 학생 예) 외국인, 주민등록 거소 불명 등	비고
1 학교장 추천서 [붙임5]	○	○	학부모 동의하에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 작성 【학교 구비】
2 경제 상황 증명 서류	○	○	학교장 추천서 내용을 증명하는 공적(公的)서류 【학부모 제출】
3 NEIS 교육비 지원 신청서 화면 캡처 (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대체용)	○	해당 없음	[NEIS>교육복지>심사관리>교육복지 학생별 이력 조회]에서 학생명 클릭 【학교 구비】
4 주민등록등본	생략	○	가구원 확인 【학부모 제출】
5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	생략	○	보험료 및 납부자와의 관계 확인 【학부모 제출】

○ 추천 대상자 사례별 증빙 서류 예시

추천 대상자 사례	증빙 서류 예시
▪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(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)	실직급여수급증서본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
▪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	법원 파산결정문 사본,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, 채권압류통지서 등
▪ 부양의무자의 질병·사고·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,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	병원 진단서, 장애인 등록증 및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등
▪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(가출 등)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	가출신고확인서, 소득증명서 등
▪ 부모의 이혼, 가계파탄으로 생계가 어려워 동사무소로부터 생계비(또는 의료비)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	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기가정 사실 확인서 (동사무소) 등
▪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·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	폐업확인서 및 소득증명서 등
▪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, 그 주택이 경매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	경매진행통지서, 소득증명서 등
▪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	추천서에 작성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※ 제출하는 서류는 경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,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을 첨부

<*증빙 서류 (예시)>

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영수증, 실직급여수급증서본, 채권압류통지서,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, 폐업확인서,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및 진단서 등

※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확인 또는 증명 가능한 모든 서류 인정 가능(면답자료 포함)

<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예시>

- ▶ 부양의무자의 사망, 행방불명(가출 등)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▶ 부모의 이혼, 가계 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▶ 갑작스런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▶ 채권 압류 및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▶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- ▶ (조)부모,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, 미등록이주아동, 다문화, 다자녀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신취약계층
- ▶ 부양의무자가 질병, 사고,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, 있어도 희귀,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
- ▶ 부양의무자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 소득 감소가 발생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- ▶ 육아기 근로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

□ 학생복지심사위원회⁵⁾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

-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

※ 대상자 선정 시 고려 사항

- 가구원 수
- 부양 의무자 중 경제 활동 가능자의 소득 정도
- 교육비 지원 신청하여 탈락한 학생 가구의 중위 소득 수준 고려
- 학교장 추천서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구비 여부
 - 고의로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, 전액 환수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회의록 작성 및 보관

-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장 추천 선정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내부 결재 후 보관

□ NEIS 교육비 지원등록

- 메뉴경로: 교육복지-심사관리-심사보장결정관리-학교장 추천

□ 주의사항

- 부득이 선정 자료에 대한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, 선정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학생의 이름, 반, 번호 등은 가명이나 기호로 처리
- 지원 과정에서 대상 학부모와 학생의 낙인 효과,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행
- 대상자 선정 시 자유수강권 지원 취지에 맞게 고려 가능(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학교장 추천 재고)
-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장 추천을 상·하반기로 분리하여 실시하거나,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 실시 권장
-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·재산 조사 후 탈락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, 확인조사 대상자로 다음 학년도(진학 포함)에 교육비 지원 신청 없이도 행복e음 소득·재산 조사 후 교육비 지원 여부 결정

※ 교육비 지원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받은 학생이 다음 학년도(진학 포함) 지원을 희망할 경우, 주민센터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거나,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함

5) 학생복지심사위원회: 학교장 추천 대상자 심의, 장학금 지원자 선정 등을 위해 학교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

붙임 5

학교장 추천서 서식

[서식] 2026학년도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서

대상 학생	성명	생년월일(외국인번호)		
	학년/반	주소		
학부모 (보호자)	성명	(서명/날인)	생년월일	학생과의관계
	주소	연락처		HP:
	교육비 지원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※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추천. 단,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없음		
추천사유 (구체적으로) ※업무담당자 작성	<p style="color: red;">조사 및 상담 내용을 작성(추천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)</p>			
	담임교사	(서명/날인)		
교육비 지원 신청 및 증빙 서류 구비 여부 (구비 여부 확인하여 체크☑)				
교육비 지원 신청한 학생 (NEIS 교육비 지원에서 명단 조회됨.)		교육비 지원 신청할 수 없는 학생 (ex. 가구원 모두 외국인, 주민등록 거소 불명)		
·NEIS 교육비 지원 신청서 화면 캡처	<input type="checkbox"/> (NEIS 상 중위소득 : _____%)	·주민등록등본	<input type="checkbox"/>	
·위 추천사유를 입증할 만한 경제 상황 증명 서류	<input type="checkbox"/> (서류 명칭 : _____)	·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사본 (영수증 기간 26년 1~4월)	<input type="checkbox"/>	
		·위 추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경제 상황 증명 서류	<input type="checkbox"/> (서류 명칭 : _____)	
※ 경제 상황 증명 서류 예시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(사본) ■ 경매진행통지서 ■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(급여명세서) ■ 가출신고확인서(파출소) ■ 주민등록말소등본(주민센터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■ 건강보험료 영수증 ■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■ 폐업확인서 ■ 채권압류통지서 		

붙임 6 학교장 추천 자체 점검표 (서식 및 예시)

연번	학교명	학년반	학생명	교육비 지원 신청 여부	교육비 지원 신청 일자	중위소득 (%)	구비서류	학생복지 심사위원회 실시 여부	비고
1	OO고등학교	1-1	홍길동	O	2026.3.27.	81	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미납내역	O	
2	OO고등학교	1-3	김복지	O	2026.3.14.	90	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영수증, 진단서, 의료기관 영수증	O	
3	OO고등학교	2-4	박학생	X	-	-	보호자가 없어 현재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인 증빙자료,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빙자료	O	주민등록 거소불명
4	OO고등학교	3-1	가나다	O	2026.3.4.	87	실적급여수급증 사본, 채권압류통지서	O	
5	OO고등학교	3-3	라마바	X	-	-	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영수증, 외국인거소확인서, 급여명세서	O	부모 모두 외국인

붙임 7 난민 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의 교육비 지원

□ 지원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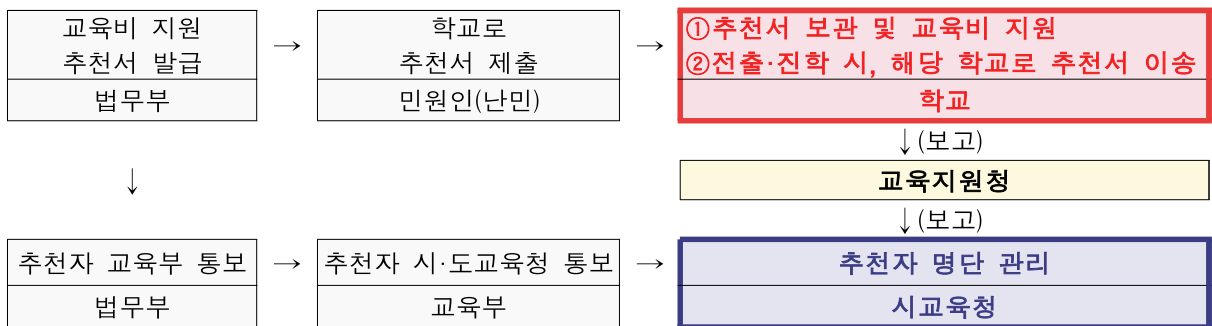
- 난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, 동법 시행규칙 제13조
-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14조
- 난민법 시행에 따른 난민인정자 교육비 지원 안내(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-2238, 2013.7.5.)

□ 지원 내용

- 항목: 고교 학비, 급식비,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, 수익자부담경비
- 시기: 학교에 추천서(법무부장관 교육비 지원 추천서) 제출한 월부터

□ 업무처리 절차

- 업무처리 흐름



- 학교에서의 업무 처리

업무 구분	세부 내용
교육비지원 추천서 수령	◦ 법무부 발행[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]
대상 관리 및 NEIS 등재	◦ 지원대상자 내부결재 후 NEIS-교육비지원-학교장추천관리 / 신규추천으로 등재하여 관리
교육청에 보고 (신규, 철회, 취소 시)	◦ 초·중·고 →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 → 학생맞춤지원담당관 (학교명, 학생이름, 학년·반, 국적, 추천서 번호 및 일자, 신규·철회·취소 구분) ※지원신청 접수 후 전자문서로 3일 이내 보고 ※교육지원청은 학교의 공문을 수합하여 매월 5일까지 보고
교육비 지원	◦ 학교 접수 월부터
예산 신청	◦ 각 사업비 예산요구 서식(자격 : 기타)에 맞추어 신청
전출입 및 상급학교 진학 시	◦ 해당학교로 추천서 이송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◦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자 지위 계속여부 확인 가능
난민 인정 취소 또는 철회 시	◦ 법무부가 공문으로 통보하고 학교는 공문 접수 일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 중단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

붙임 8 부정수급 방지 및 보장비용 징수

□ 관련 근거

- 초·중등교육법 제60조의12(비용의 징수) 및 제67조(벌칙)

□ 부정수급⁶⁾의 정의 및 확인

- (정의)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로, 수급자뿐 아니라 기타 관계인도 해당
- (확인) 시·군·구청은 교육비 지원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, 부정수급 내용, 대상자, 실제 소득인정액 등을 학교로 통보

□ 보장비용 징수 절차 ※ 징수한 보장비용은 시·도교육청의 그 외 수입으로 처리

- (징수기간 산정) 시·군·구청에서 통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사하여 교육비 계속 지원 여부 결정. 지원 기준 초과로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 항목은 신청 시부터 기산하여 보장비용 징수
- (납부통지) 30일의 기한을 정해 보장비용·부당이득 징수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징수대상자에게 송부
- (분할납부)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분할징수 가능
- (독촉)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기한을 정해 이를 독촉하고, 이 기한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

□ 행정 조치 사항

- (결손처분)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
- (소멸시효) 5년(단,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등 10년)
- (고발조치) 부정수급 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자는 고발조치. 단,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,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함

6) 부정수급 예시: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소득·재산이 있는 가구원을 누락시킨 경우,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·재산을 누락시킨 경우 등

